

無지가惹起시킨自殺發明

— 護岸用 테트리포트가 象徵 —

해안의 護岸用으로 各國에서 使用되고 있는 테트리포트(4突出體블럭)는 優秀한 發明이면서도 獨占權을 取得치 못한 代表的인 自殺發明으로 알려져 있다.

이 테트리포트는 프랑스의 넬빅研究所長 더엘이 1945년에 발명한 것이다. 그는 1954년 日本特許廳에 特許出願하였다. 그보다 2日前에 그 발명이 掲載된 프랑스特許明細書가 日本特許廳에 到着하였다. 따라서 日本國內에서 刊行物에 의한 公지가 된 것이다.

이 출원이 파리同盟協約에서 認定하는 1년이란 優先權期間內에 우선권을 主張하여 출원되었거나 출원 3日前에 日本에 출원되었더라면 그 특허는 權利가 賦與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最終審이된 東京高法에서 특허청의 判斷인 審決을 支持함으로써 終局에는 拒絕査定되고 말았다.

그때의 日本特許法은 그 발명이 記載된 간행물이 日本國內에서 頒布되었을 때에는 新規性を 喪失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 法條項을 適用한 것이다.

1883年 3月 20일에 파리에서 署名된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同盟協約의 條理는 各國의 國內法이나 2國間 또는 多數國間에 適用限界를 두고 있다.

이 조약의 主旨는……

- ① 屬地主義를 인정하는 各國特許權의 獨立.
- ② 內國民待遇에 主眼點을 둔 內外國人平等原則
- ③ 1年間의 餘裕가 있는 優先權制度의 相互認定의 大原則이 骨子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各同盟國의 國民은 다른 동맹국에서도 그나라 국민에게 주어진 條件과 節次에 服從한다면 그나라 국민과 同一한 보호를 받으며 자기의 權利침해에 대하여 그나라 국민과 똑같은 法律上의 救濟를 받게 되어 있다.

또 특허에 대해서는 동맹의 1國에 특허출원하고 그 출원이 正當한 출원이면 그에 따라 다른 동맹국에 출원한 특허는 第1國에 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제 1국출원일 이후 제 2국출원일전에 내놓은

다른 출원의 그 발명의 公表 또는 實施, 그리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不利한 取扱을 받지않게 되어 있다. 또한 이들 행위는 제 3자의 어떠한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파리協約 第4條 3項의 우선권에 관한 規定이다.

우선권의 基礎가 되는 最初의 출원일전에 제 3자가 취득한 권리에 관하여는 各同盟國의 國內法令에 따르게 되어 있다.

外國 가운데 日本은 先使用權을 인정하는 한편 그 선사용에 의해 新規성 또는 進歩性이 인정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거절사정되며 특허권은 무효가 된다.

한편 英國에서는 先出願者에게 특허권을 주되 그 者가 先發明者가 아닐 때는 그 특허는 인정하지 않으며 취소의 對象이 된다. 英國特許法은 先願登錄制度가 아니며 先發明主義를 擇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指摘한 테트리포트事件은 發明者가 自國外의 國家法律에 익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管理에도 疎忽한 象徵이라 할수 있다.

이 사건에 직접으로 關聯은 없다하더라도 테트리포트를 生産하는 型틀의 實用新案權의 紛爭은 꽤 오래 持續되었다. 이 型틀의 日本에서 처조권리자도 넬빅이 現地法人 프랑스物産으로하여금 1955년 7월 21일에 출원시켰고 1957년 8월 29일에 公告, 특허 237537호로 등록되었으며 發明名稱은 「共通의 中心部에서 突出하는 4개의 凸出部가 있는 對稱的인 블럭의 製造用型틀」이다.

한편 日本의 伊藤佐又是 「4突出體블록製造用型틀」이란 考案으로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1961년 7월 14일에 등록까지 되었다. 내용으로 보아 프랑스物産의 특허와 伊藤의 실용신안이 어느만큼 差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伊藤이 프랑스物産이 아닌 八幡메달폼에 提起한 訴訟은 실용신안권자이고 債權者이며 提訴者인 伊藤의 敗訴로 終末되었다는 이야기이다.